

등록번호	총무과-2418
등록일자	2016.1.21.
결재일자	2016.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주무관	인사팀장	총무과장	행정관리과장	부구청장	구청장
임소영	문영일	김종석	박희균	황지영	01/22 최창식
협조	주무관 의회법제팀장 기획예산과장	서재원 이창하 권순우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계획

2015년도 관리운영직군 전직시험 합격자의 전직임용 및 소득세제 개편 관련 세무인력 확충, 현행 정원표 상의 규정 외 표기사항 개선을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계획



행정관리국
총 무 과

I 개 정 근 거

- 2015년 관리운영직군 및 전담직위 공무원 전직시험 합격자 명단 통보 및 임용절차 안내 [서울시 인사과-33534, 15.12.01]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자치단체 세무인력 보강지침』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96, 14.01.09]
- 자치구 직급·직렬별 정원표 개선방안 안내 [서울시 조직담당관-15658, 15.12.22]

II 개 정 이 유

- 관리운영직군 전직임용을 위한 전직예정 직렬 정원 증원
 - 2015년 관리운영직군 전직시험 합격자의 전직임용을 위해 전직예정 직렬 정원 증원
 - 전직시험 합격자 현황

구분	계	사무운영(워드,전산)				기계운영	전기운영	비고
		소계	6급	7급	8급	7급	7급	
합격인원	15	10	1	8	1	2	3	
전직인원	15	10	1	8	1	2	3	

- 전직예정 직렬·직급 현황

계	행정				전산	기계	전기
	소계	6급	7급	8급	7급	7급	7급
15	9	1	7	1	1	2	3

관리운영직군 전직현황

구분	2016년 이전					2016년					미전환인원				
	계	6급	7급	8급	9급	계	6급	7급	8급	계	6급	7급	8급	9급	
계	65	2	36	22	5	15	1	13	1	40	2	34	3	1	
사무운영	56	1	29	21	5	10	1	8	1	21	1	18	2	-	
기계운영	5	1	4	-	-	2	-	2	-	5	-	5	-	-	
전기운영	4	-	3	1	-	3	-	3	-	12	1	9	1	1	
농림운영	-	-	-	-	-	-	-	-	-	2	-	2	-	-	

□ **세무직 신규임용을 위한 정원 확보**

- 지방소득세제 개편에 따른 행정자치부 인력확충 지침에 따라 세무직렬 신규임용 (행정자치부 배정인원 3명)을 위해 세무직 **정원 3명 추가확보**

« 세무직 직급별 정·현원 현황[6급 복수정원 포함] _ 2016. 1. 10 현재 »

전 체			6급			7급			8급			9급		
정원	현원	차이	정원	현원	차이	정원	현원	차이	정원	현원	차이	정원	현원	차이
74	74	-	15	15	-	21	22	+1	32	29	-3	6	8	+2

□ **직급·직렬 정원표 상의 규정 외 표기사항 개선**

- 직렬이 아님에도 정원표 상에 직렬에 혼동하여 사용 중인 “임기제” 표기 삭제
⇒ 지방공무원임용령【별표】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 규정된 해당 직렬정원에 포함

III 주 요 내 용

□ **관리운영직군 전직임용을 위한 직렬간 정원조정**

- 전직대상 관리운영직렬 정원 감소정하고 전직예정 직렬(일반직) 정원 증원
 - [감축] 사무운영 10, 기계운영 2, 전기운영 3 → [증원] 행정9, 전산1, 기계2, 전기2
- 사무운영(위드)직렬 전직에 따른 정원 조정

감 축				
직렬·직급	정원			증감
	현행	개정	증감	
계				△10
사무 운영	위드7급	1	0	△1
	위드8급	5	3	△2
	위드9급	23	17	△6
	전산8급	1	0	△1

증 원				
직렬·직급	정원			증감
	현행	개정	증감	
계				+10
행정	행정6급	150	151	+1
	행정7급	204	211	+7
	행정8급	186	187	+1
전산	전산8급	5	6	+1

○ **기계운영직렬 전직에 따른 정원 조정**

감 축				
직렬·직급	정원			
	현행	개정	증감	
계			△2	
기계 운영	영사7급	1	0	△1
	기계9급	4	3	△1

증 원			
직렬·직급	정원		
	현행	개정	증감
계			+2
기계 7 급	4	5	+1
기계 9 급	4	5	+1

○ **전기운영직렬 전직에 따른 정원 조정**

감 축			
직렬·직급	정원		
	현행	개정	증감
계			△3
전기운영 9급	8	5	△3

증 원			
직렬·직급	정원		
	현행	개정	증감
계			+3
전기 9 급	5	8	+3

전직에 따른 정원 관리방안

● **정원관리 상 문제점**

- 근속승진자의 경우 승진 전 하위 직급의 정·현원으로 관리됨에도 전직 시 근속승진 여부와 관계없이 전직 당시 직급으로 임용되어 정원관리 상 불일치 발생
⇒ 전직대상 직급 중 7급이 대다수로 정원조례 상 직급별(7급) 정원기준 초과

« 전직임용에 따른 직급별 정원 증감 현황 »

구분	일 정 직 원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조 례 상 정 원 기 준	1,203	1% 이내 (12명)	7% 이내 (84명)	22% 이내 (264명)	31% 이내 (372명)	32% 이내 (384명)	6%이상
2014년	1,203	7	57	229	354	344	210
현 행	1,203	7	57	229	360	346	202
16년 전직직급 (現정원관리)	1,203	-	-	1 (7급)	13 (7급,8급,9급)	1 (8급)	-

● **전직에 따른 정원 관리방안 : 정원조례상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유지**

- 직급별 정원기준 범위 내에서 전직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정원책정 기준 유지
- 직급별 정원기준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전직된 직급의 초과현원으로 관리
* 전직대상 직렬의 직급별 정원 조정사항 반영하여 전직예정 직렬 직급정원 증원(⇒ 행정직렬 전직의 경우 승진체제 감안하여 정원책정 기준 범위 내에서 전직예정 직급 정원 증원, 타 직렬의 경우 근속승진 등 현 정원관리 사항 반영하여 정원조정)

□ **세무직렬 정원 증원 : 3명**

○ 타 직렬 정원 상계조정을 통한 세무직 증원

- 작고 효율적인 조직운동을 위하여 총 정원 증가 없이 기존 정원 내에서 기능감소 직렬의 퇴직정원 정비 등을 통해 세무직 증원
- **[감축] 방호(경비) 3명 → [증원] 세무 3명**

감 축				
직렬 · 직급	정원			증감
	현행	개정	증감	
계				△3
방 호 9 급	13	10	△3	

증 원				
직렬 · 직급	정원			증감
	현행	개정	증감	
계				+3
세 무 9 급	6	9	+3	

□ **정원표 상 규정 외 표기사항 개선 : “임기제” 표기 삭제**

- 직급 · 직렬별 정원표 상 직렬로 혼동되어 사용 중인 “임기제” 표기 삭제
-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렬 범위로 정원 표기사항 조정(* 임기제 ⇒ 일반직공무원 해당 직렬 정원에 포함)

연번	현행	개정	연번	현행	개정
1	임기제 의무(의사)	의 무	11	임기제의료기술	의 료 기 술
2	행정또는임기행정감사	행 정	12	임기제행정(언론홍보)	행 정
3	임기제 보건진료(의사)	보 건 진 료	13	임기제행정(영사)	행 정
4	임기제시설(디자인)	시 설 (디 자 인)	14	임기제행정(홍보)	행 정
5	임기제시설(건축)	시 설 (건 축)	15	임기제행정(평생교육)	행 정
6	임기제시설(도시계획)	시 설 (도시 계 획)	16	임기제행정(기록물관리)	행 정
7	임기제 전산(전산디자인)	전 산	17	임기제행정(사진촬영)	행 정
8	임기제 전산(전산)	전 산	18	임기제녹지(조경녹지)	녹 지
9	임기제시설(교통)	시 설 (교 통 시 설)	19	임기제식품위생영양	식 품 위 생
10	임기제시설(디자인)	시 설 (디 자 인)	20	임기제공업(전기관리)	공 업 (전 기)

감 축					
직급 · 직렬		정원			
		현행	개정	증감	비고
계					
5급	임기제의무(의사)	7	0	△7	삭제
	행정또는임기행정감사	1	0	△1	삭제
6급	임기제 보건진료(의사)	3	0	△3	삭제
	임기제시설(디자인)	1	0	△1	삭제
7급	임기제행정(홍보)	1	0	△1	삭제
	임기제행정(평생교육)	1	0	△1	삭제
	임기제전산(전산디자인)	1	0	△1	삭제
	임기제시설(건축)	1	0	△1	삭제
	임기제시설(도시계획)	1	0	△1	삭제
	임기제시설(교통)	2	0	△2	삭제
	임기제시설(디자인)	1	0	△1	삭제
	임기제기술(물리치료)	1	0	△1	삭제
8급	임기제행정(언론홍보)	1	0	△1	삭제
	임기제행정(영사)	1	0	△1	삭제
	임기제행정(기록물관리)	1	0	△1	삭제
	임기제전산(전산)	1	0	△1	삭제
	임기제시설(교통)	1	0	△1	삭제
9급	임기제녹지(조경녹지)	1	0	△1	삭제
	임기제행정(사진촬영)	1			
	임기제식품위생	1			
	임기제공업(전기관리)	1			

증 원					
직급 · 직렬		정원			
		현행	개정	증감	비고
계					
5급	의 무		7	+7	신설
	행 정	35	36	+1	
6급	보건진료	3	3	+3	신설
	시 설	15	16	+1	
7급	행 정	211	213	+2	
	전 산	3	4	+1	
	시 설	31	36	+5	
	행 정	187	190	+3	
8급	전 산	6	7	+1	
	시 설	34	35	+1	
	녹 지	4	5	+1	
9급	행 정	50	51	+1	
	식품위생		1	+1	신설
	전 기	8	9	+1	

※ 임기제 공무원 정원 : 별도 서식[서식 1] 작성·관리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IV 추진 일정

규칙 개정 방침 : 2016. 1월 중

입법예고 :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38 ①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 : 2016. 1월 중

공 포 : 2016. 2. 5. [예정]

V 참고 사항

예산조치 : 비예산

합 의 : 합의 불필요

규제심사 : 해당없음(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기 타 :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 관련)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총 계		1,211	867	25	103	216
정무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반직 계		1,203	863	21	103	216
3급 소계		1	1			
행정		1	1			
4급 소계		6	5		1	
서기관		3	3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			
기술서기관(보건·의무)		1			1	
5급 소계		57	30	1	11	15
행정		36	21	1		14
시설(토목1, 건축1, 지적1)		3	3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복지		1	1			
행정·보건		2			2	
행정·시설		4	4			
의무·약무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1			1	
의무		7			7	
6급 소계		230	171	3	20	36
행정		151	109	3	8	31
세무		14	14			
사회복지		6	4			2
전산		1	1			
방호		1	1			
공업(기계2, 전기2, 화공1)		5	5			
복지		3	3			
의료기술		1			1	
약무		2			2	
간호		5			5	
환경		1	1			
시설(토목6, 건축6, 지적3, 디자인1)		16	16			
시설(토목·건축)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행정4, 토목1, 건축1)		6	6			
보건·의료기술		1			1	
공업(화공)·보건·환경		1	1			
보건진료		3			3	
위생		1	1			
운전		3	3			
전기운영(전기)		1	1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7급 소계		366	276	9	30	51
행정		213	154	6	9	44
세무		21	21			
사회복지		15	7		1	7
전산		4	4			
속기		3		3		
방호		6	6			
공업(기계5, 전기4, 화공3)		12	12			
복지		3	3			
수의		1	1			
보건		7	3		4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5			5	
환경		1	1			
약무		2			2	
간호		9			9	
시설(토목14, 건축12, 지적6, 디자인1, 도시계획1, 교통시설2)		36	36			
방송통신		1	1			
위생		3	3			
시설관리		9	9			
운전		8	8			
전기운영(전기)		3	3			
기계운영(기계1)		1	1			
농림운영(원예)		2	2			
8급 소계		345	256	2	28	59
행정		190	136	2	5	47
세무		32	32			
사회복지		15	6			9
전산		7	6			1
방호		4	4			
공업(기계4, 전기5, 화공1)		10	10			
복지		5	5			
보건		5			5	
의료기술		5			5	
간호		13			13	
환경		2	2			
시설(토목18, 건축10, 지적6, 교통시설1)		35	35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2	2			
위생		1	1			
시설관리		5	5			
운전		6	6			
전기운영(전기)		3	3			
기계운영(기계)		1	1			
사무운영(워드3)		3	1			2

신·구조문 대비표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9급 소계		196	122	6	13	55
행정		51	21	2		28
세무		9	9			
사회복지		14	11			3
전산		2	1		1	
방호		10	9	1		
공업(기계5, 전기9)		14	13	1		
녹지		2	2			
보건		2			2	
의료기술		2			2	
환경		1	1			
식품위생		1			1	
시설(토목7, 건축3, 지적4)		14	14			
방송통신		1	1			
위생		4	4			
운전		44	21	2	6	15
전기운영(전기)		5	5			
기계운영(기계)		3	2			1
사무운영(워드)		17	8		1	8
전문경력관 소계		2	2			
나군		2	2			
화생방담당		2	2			
별정직 계		7	3	4		
5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1	1			
전문위원		2		2		
6급상당 소계		1	1			
비서		1	1			
7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3	1	2		

현행							개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관련)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관련)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총 계		1,211	867	25	103	216	총 계		1,211	867	25	103	216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1	1			
구 청 장		1	1				구 청 장		1	1			
일반직 계		1,203	863	21	103	216	일반직 계		1,203	863	21	103	216
3급 소계		1	1				3급 소계		1	1			
행정		1	1				행정		1	1			
4급 소계		6	5		1		4급 소계		6	5		1	
서기관		3	3				서기관		3	3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			
기술서기관(보건·의무)		1			1		기술서기관(보건·의무)		1			1	
5급 소계		57	30	1	11	15	5급 소계		57	30	1	11	15
행정		35	20	1		14	행정		36	21	1		14
시설(토목1, 건축1, 지적1)		3	3				시설(토목1, 건축1, 지적1)		3	3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녹지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2			2		행정·보건		2			2	
행정·시설		4	4				행정·시설		4	4			
의무·약무		1			1		의무·약무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1			1	
임기제 의무(의사)		7			7		의무		7			7	
행정 또는 임기제 행정(감사)		1	1				임기제-의무(의사)		7			7	
6급 소계		229	171	3	20	35	행정 또는 임기제 행정(감사)		+	+	-	-	
행정		150	109	3	8	30	6급 소계		230	171	3	20	36
세무		14	14				행정		151	109	3	8	31
사회복지		6	4			2	세무		14	14			
전산		1	1				사회복지		6	4			2
방호		1	1				전산		1	1			
공업(기계2, 전기2, 화공1)		5	5				방호		1	1			
녹지		3	3				공업(기계2, 전기2, 화공1)		5	5			
의료기술		1			1		녹지		3	3			
약무		2			2		의료기술		1			1	
간호		5			5		약무		2			2	
환경		1	1				간호		5			5	
시설(토목6, 건축6, 지적3)		15	15				환경		1	1			
시설(토목·건축)		1	1				시설(토목, 건축, 지적, 디자인)		16	16			
행정·세무		1	1				시설(토목·건축)		1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세무		1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보건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시설(행정4, 토목1, 건축1)		6	6				행정·보건		1	1			
보건·의료기술		1			1		행정·시설(행정4, 토목1, 건축1)		6	6			
공업(화공)·보건·환경		1	1				보건·의료기술		1			1	
위생		1	1				공업(화공)·보건·환경		1	1			
운전		3	3				위생		1	1			
전기운영(전기)		1	1				운전		3	3			
임기제 보건진료(의사)		3			3		전기운영(전기)		1	1			
임기제 시설(디자인)		1	1				임기제-보건진료(의사)		3			3	
							임기제-시설(디자인)		+	+			

현행						개정안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7급 소계		360	274	9	30	47	7급 소계		366	276	9	30	51
행정		204	150	6	9	39	행정		213	154	6	9	44
세무		21	21				세무		21	21			
사회복지		15	7		1	7	사회복지		15	7		1	7
전산		3	3				전산		4	4			
속기		3		3			속기		3		3		
방호		6	6				방호		6	6			
공업(기계4, 전기4, 화공3)		11	11				공업(기계5, 전기4, 화공3)		12	12			
녹지		3	3				녹지		3	3			
수의		1	1				수의		1	1			
보건		7	3		4		보건		7	3		4	
식품위생		1	1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4			4		의료기술		5			5	
환경		1	1				환경		1	1			
약무		2			2		약무		2			2	
간호		9			9		간호		9			9	
시설(토목14, 건축11, 지적6)		31	31				시설(토목14, 건축12, 지적6, 디자인, 도시계획1, 교통시설2)		36	36			
방송통신		1	1				방송통신		1	1			
위생		3	3				위생		3	3			
시설관리		9	9				시설관리		9	9			
운전		8	8				운전		8	8			
전기운영(전기)		3	3				전기운영(전기)		3	3			
기계운영(기계1, 영사1)		2	2				기계운영(기계1, 영사1)		1	1			
농림운영(원예)		2	2				농림운영(원예)		2	2			
사무운영(워드)		1				1	사무운영(워드)		1				1
임가제 시설(건축)		1	1				임가제 시설(건축)		1	1			1
임가제 시설(도시계획)		1	1				임가제 시설(도시계획)		1	1			
임가제 전산(전산디자인)		1	1				임가제 전산(전산디자인)		1	1			
임가제 시설(교통)		2	2				임가제 시설(교통)		2	2			
임가제 시설(디자인)		1	1				임가제 시설(디자인)		1	1			
임가제 의료기술(물리치료)		1			1		임가제 의료기술(물리치료)		1			1	
임가제 행정(홍보)		1	1				임가제 행정(홍보)		1	1			
임가제 행정(평생교육)		1	1				임가제 행정(평생교육)		1	1			
8급 소계		346	256	2	28	60	8급 소계		345	256	2	28	59
행정		186	133	2	5	46	행정		190	136	2	5	47
세무		32	32				세무		32	32			
사회복지		15	6			9	사회복지		15	6			9
전산		5	5				전산		7	6			1
방호		4	4				방호		4	4			
공업(기계4, 전기5, 화공1)		10	10				공업(기계4, 전기5, 화공1)		10	10			
녹지		4	4				녹지		5	5			
보건		5			5		보건		5			5	
의료기술		5			5		의료기술		5			5	
간호		13			13		간호		13			13	
환경		2	2				환경		2	2			
시설(토목18, 건축10, 지적6)		34	34				시설(토목18, 건축10, 지적6, 교통시설1)		35	35			
방재안전		1	1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2	2				방송통신		2	2			
위생		1	1				위생		1	1			
시설관리		5	5				시설관리		5	5			
운전		6	6				운전		6	6			

현행						개정안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전기운영(전기)		3	3				전기운영(전기)		3	3			
기계운영(기계)		1	1				기계운영(기계)		1	1			
사무운영(워드5, 전산1)		6	1			5	사무운영(워드3, 전산1)		3	1			2
임가제 시설(교통)		1	1				임가제 시설(교통)		+	+			
임가제 전산(전산)		1	1				임가제 전산(전산)		+	+			
임가제 행정(언론홍보)		1	1				임가제 행정(언론홍보)		+	+			
임가제 행정(영사)		1	1				임가제 행정(영사)		+	+			
임가제 행정(기록물관리)		1	1				임가제 행정(기록물관리)		+	+			
임가제 녹지(조경녹지)		1	1				임가제 녹지(조경녹지)		+	+			
9급 소계		202	124	6	13	59	9급 소계		196	122	6	13	55
행정		50	20	2		28	행정		51	21	2		28
세무		6	6				세무		9	9			
사회복지		14	11			3	사회복지		14	11			3
전산		2	1		1		전산		2	1		1	
방호		13	12	1			방호		10	9	1		
공업(기계4, 전기5)		9	9				공업(기계5, 전기9)		14	13	1		
녹지		2	2				녹지		2	2			
보건		2			2		보건		2			2	
의료기술		2			2		의료기술		2			2	
환경		1	1				환경		1	1			
시설(토목7, 건축3, 지적4)		14	14				시설(토목7, 건축3, 지적4)		14	14			
방송통신		1	1				방송통신		1	1			
위생		4	4				위생		4	4			
운전		44	21	2	6	15	운전		44	21	2	6	15
전기운영(전기)		8	8				전기운영(전기)		5	5			
기계운영(기계)		4	2	1		1	기계운영(기계)		3	2			1
사무운영(워드)		23	10		1	12	사무운영(워드)		17	8		1	8
임가제 식품위생(영양사)		1			1		임가제 식품위생(영양사)		+				+
임가제 공업(전기관리)		1	1				임가제 공업(전기관리)		+	+			
임가제 행정(사전활영)		1	1				임가제 행정(사전활영)		+	+			
전문경력관 소계		2	2				전문경력관 소계		2	2			
나군		2	2				나군		2	2			
화생방담당		2	2				화생방담당		2	2			
별정직 계		7	3	4			별정직 계		7	3	4		
5급상당 소계		3	1	2			5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1	1				비서		1	1			
전문위원		2			2		전문위원		2			2	
6급상당 소계		1	1				6급상당 소계		1	1			
비서		1	1				비서		1	1			
7급상당 소계		3	1	2			7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3	1	2			비서		3	1	2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제29조 (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 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제30조 (정원의 규정)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기구와 정원규칙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7.3>